

의안번호	2218641
의 퇴 인	허영의원
회 답 일	2026.8.20.
추계번호	26D2368

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25만원, 2031년 825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,125만원(연 평균 825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남북스포츠교류협력 추진협의회 (안 제5조)	825	825	825	825	825	4,125	825

주: 위 추가재정소요는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 회의가 연간 4회 개최되는 경우 민간위원 5명에 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재정은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)	통일부장관은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함)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5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 추진협의회)	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하고,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를 둔(제1항)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 중 5명 이상은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함(제3항 및 제5항)	의무규정
3	안 제9조(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의 지원)	정부는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포츠 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주요내용
1	안 제4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)	×	미첨부 3호: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인력규모 및 사업내용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2	안 제5조(남북스포츠교류협력 추진협의회)	○	-
3	안 제9조(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의 지원)	×	미첨부3호: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은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·조정 및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를 설치하는 내용으로, 협의회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에 추가재정소요 발생
- 안 제5조는 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 중 5명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전문가 5명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
- 통일부의 유사 위원회인 “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”를 참고하여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3회로 가정하고,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회의 참석수당¹⁾ 및 안전검토비²⁾를 참고하여 55만원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

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2)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전검토 사례비 25만원 준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결과 남북스포츠교류·협력 추진협의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125만원(연 평균 825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협의회 설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민간위원 수	5	5	5	5	5	—
회의참석수당	55	55	55	55	55	—
연간 회의개최 횟수	3	3	3	3	3	—
합계	825	825	825	825	825	4,12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